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고시 알림

1.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(PIC/S) 가입국으로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을 국제조화하고, GMP 적합판정제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, 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)을 '23.12.28.자로 개정·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제개정고시 등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붙임 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

#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귀하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귀하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귀하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귀하

약무주사보 이종훈 사무관 대결 2023. 12. 28. 의약품품질과 전결 정명훈 장

협조자

시행 의약품품질과-7120 (2023. 12. 28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2791 팩스번호 043-719-2750 / [kouuouu@korea.kr](mailto:kouuouu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